

광주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2나661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2나66117 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2. 9. 7 선고 2021가단202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1. B

2. C

3. D

4. E

5. F

변론 종결 2024. 4. 18.

판결 선고 2024. 5. 23.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2. 9. 7. 선고 2021가단2026 판결

주문

- 제1심판결 중 피고 C, D, E, F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 원고에게 전남 신안군 G 답 2694.3㎡ 중 피고 D은 3/9지분, 피고 C, E, F은 각 2/9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971. 12. 10. 접수 제1373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D, C, E, F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선택적으로, 전남 신안군 G 답 2694.3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0. 5. 14. 접수 제2053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D은 3/9지분, 피고 C, E, F 각 2/9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971. 12. 10. 접수 제1373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1) 또는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피고 D, C,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전남 신안군 H 임야 1861m²(이하 '환지 전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J가 1971. 12. 10. 환지 전 토지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후행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환지 전 토지는 1997. 8. 1. 이 사건 토지로 환지되었으므로, J의 상속인인 배우자 피고 D, 자녀 피고 C, E, F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 D, C, E, F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이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및

2022. 3.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등을 송달받았음에도, 제1심부터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 이외의 기일통지에도 불구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J의 상속인인 배우자 피고 D은 3/9지분, 자녀인 피고 C, E, F은 각 2/9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971. 12. 10. 접수 제1373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원고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9행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등기의 효력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고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바탕이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선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15. 선고 99다6691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3행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와 ". 그런데"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1991. 5. 2. 환지 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J는 1993. 9. 15. 환지 전 토지에 대한 지번이 K에서 H로 직권 경정되면서 비로소 환지 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의 이전등기가 J의 이전등기보다 선행등기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중복보존등기의 선행여부는 이전등기의 바탕이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선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은 앞서 본 법리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4, 5행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P이 환지 전 토지를 사정받아 원시취득한 이후로 I 외 2인, N, O, 원고 명의로 그 토지대장상 소유권을 순차적으로 이전받은 소유자이고, 반면 제1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소의 과실 등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원인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환지 전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에는 P이 1940. 9. 2. 소유자등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사정을 받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P이 환지 전 토지를 사정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P이 환지 전 토지를 사정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상속인으로 보이는 I가 1962. 12. 24. 환지 전 토지에 관한 제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상 제1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원고는 환지 전 토지의 원인무효 근거 사유로 '환지 전 토지는 당초 전남 신안군 Q이었는데 직권 정정 후에도 위 Q에 대한 등기기재가 없다'는 것을 들고 있는바, 원고 언급의 'Q'의 등기부번호는 'R'인 반면에(갑 제3호증의 제17면), 환지 전 토지의 등기부번호는 'S'로 다른 만큼(갑 제3호증의 제10면) 이와 달리 그 동일함을 전제로 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환지 전 토지의 지번이 무단으로 당초와 달리 정정 기재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바, 환지 전 토지의 조사표(갑 제3호증의 제10면)상 당초의 지번 정정 기재의 흔적이 있기는 하나 그러한 기재가 장기간 유지되었던 점(최소 1981. 11. 21. 이전부터이다), 그 무렵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 등이 있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러한 정정이 무단으로 행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D, C, E, F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 D, C, E, F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며,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양섭

판사박은주

판사변종두

1) 원고가 원심에서 이 사건 제소 전인 2018. 7. 27. 사망한 J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상속인인 피고 D, C, E, F으로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을 하고 이들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까지 다시 제출한 점을 고려하여, 해당 상속지분별로 구하는 것으로 이 부분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택한다.